



統一도메인이름 紛爭解決 規定

(ICANN 이사회가 1999년 8월 26일 채택하고 동년 10월 24일에 그 실행문서를 승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해 한글로 번역됨.

1. 본 규정은 현재 발효중임. 시행일자에 대해 자세한 것은

www.icann.org/udrp/udrp-schedule.htm를 참조.

2. 본 규정은 .com, .net, .org로 끝나는 도메인 이름에 대해 승인을 받은 모든

등록기관에 의해 채택되었음. 또한 .nu, .tv, .ws와 같은

국가명최상위도메인 이름을 관리하는 일정한 기관에 의해 채택됨.

3. 본 규정은 등록기관(혹은 일정 국가명최상위도메인 이름 관리기관)과 그

등록인(도메인 이름 소유자)간의 관계를 다룬 것임.

1. **目的.** 통일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규정(이하 '이 규정'이라 한다)은 ICANN에 의하여 채택되었으며, 도메인 이름 등록인(이하 '등록인'이라 한다)이 동의한 등록약관 내에 포함되어 등록인에 의해 등록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대한 등록인과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제3자간의 분쟁에 관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제4조에 따른 의무적인 분쟁 처리절차는 www.icann.org/udrp/udrp-rules-24oct99.htm에 나와 있는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규정의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과 ICANN에 의하여 승인된 행정적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의 보충규칙에 따라 행해진다.

2. **도메인 이름 登錄人에 의한 陳述.** 등록인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신청 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유지나 갱신을 신청함에 있어 등록기관에 대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 a. 등록약관에 기재한 진술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
- b. 등록인이 알고 있는 한 당해 도메인 이름의 등록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 c. 부정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지 않으며,
- d. 당해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어떠한 증거 법령이나 규정들을 위반하는지 알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 등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책임을 진다.

3. 도메이이름 登錄의 取消, 移轉 및 變更. 등록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이이름 등록을 취소, 이전 또는 변경의 절차를 실행한다.

- a. 등록인이나 그 권한있는 대리인으로부터 도메이이름 등록을 취소, 이전 또는 변경의 청구를 서면이나 적절한 전자문서 형태로 접수한 때. 단,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b. 특정 사건의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나 중재기관으로부터 도메이이름 등록을 취소, 이전 또는 변경하라는 명령을 접수한 경우
- c. ICANN이 채택한 이 규정 또는 그 개정판에 기초하여 실시되었으며 등록인이 당사자가된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도메이이름 등록을 취소 또는 이전하라는 행정패널의 결정문을 접수한 경우(하기 제4조 (i) 및 (k) 참조)

도메인 등록기관은 도메인 등록인의 등록약관상의 조건 또는 다른 법률상의 요청에 기하여 도메이이름의 등록을 취소, 이전, 변경할 수 있다.

4. 義務的인 行政節次 이 조항은 등록인이 의무적으로 분쟁해결절차에 응하여야 하는 분쟁의 형태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는 www.icann.org/udrp/approved-providers.htm에서 열거하는 행정적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들(이하 각각은 '분쟁해결기관'이라 한다.)중에서 한 분쟁해결기관에 의해 행해진다.

- a. 適用對象이 되는 紛爭** 제3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절차규칙에 따라 다음 각호에 열거된 사항을 이유로 한 분쟁해결의 신청을 한 경우에, 등록인은 분쟁해결절차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이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이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이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서 분쟁해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앞에 열거된 세가지 사항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

- b. 不正한 目的의 登錄 및 使用의 證據.** 제4조 (a)(iii)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분쟁해결기관의 패널이 판단한 경우에는, 도메이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본다.

- (i)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영자에 대해서 당해 도메이이름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서류에 의해 입증된 직접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도메이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이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 (ii)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상응하는 도메이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그 도메이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등록인이 그러한 방해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 (iii) 등록인이 경영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이이름을 등록한 경우

(iv) 등록인이 도메이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

c. 申請人の 紛争申請에 對應한 도메이이름 登錄人の 도메이이름에 대한 權利 및 正當한 利益의 立證方法. 등록인이 분쟁해결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절차규칙 제5조를 참조하여야 한다. 패널이 그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4조 (a)(ii)의 규정의 취지상 등록인이 그 도메이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본다.

(i) 등록인이 도메이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없이 당해 도메이이름 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ii) 등록인(개인, 기업이나 기타 단체로서)이 비록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당해 도메이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

(iii) 등록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그 도메이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d. 紛争解決機關의 選定. 신청인은 ICANN에 의해 승인된 분쟁해결기관들중 어느 한 분쟁해결기관에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분쟁해결기관을 선정한다. 신청인에 의하여 선정된 당해 분쟁해결기관은 제4조 (f)에 의한 병합심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절차를 관장·실시한다.

e. 節次의 開始 및 進行과 行政패널의 指名. 절차의 개시 및 진행 그리고 분쟁을 심판할 패널(이하 '행정패널'이라 한다.)의 선정에 대하여는 절차규칙에서 정한다.

f. 併合審理. 동일한 등록인과 신청인 사이에 복수의 도메이니름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어느 한 당사자는 하나의 행정패널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당사자간에 계속중인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최초의 행정패널에게 하여야 한다. 행정패널은 만약 그러한 분쟁들이 ICANN에 의해 채택된 이 규정 또는 그 개정판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의 재량에 의하여 그러한 분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할 수 있다.

g. 費用. 이 규정에 의한 분쟁에 관하여 분쟁해결기관이 청구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절차규칙 제5조 (b)(iv)의 규정에 따라 등록인이 패널리스트의 수를 1인에서 3인으로 증원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모든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h. 도메이니름 登錄機關의 行政節次에의 關與. 등록기관은 행정패널에 의한 절차의 관장 또는 그 실시에 일절 관여하지 아니한다. 또한 등록기관은 행정패널에 의해 내려진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i. 救濟措置. 행정패널에서 행해지는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구제조치는 등록인의 도메이니름의 등록취소 또는 그 도메이니름의 신청인에로의 이전에 국한된다.

j. 通知 및 公表. 분쟁해결기관은 등록인이 그 도메이니름을 등록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그 등록된 도메인과 관련해서 행정패널이 내린 모든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모든 결정문은 행정패널이 부분적으로 변경 · 수정하여 공표한다고 결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해 전문 공표된다.

k. 司法節次의 可能性. 의무적인 행정절차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인이나 신청인은 의무적 행정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나 종결된 후에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행정패널이 등록인의 등록된 도메이니름의 등록취소 또는 이전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경우에, 등록기관은 당해 분쟁해결기관으로부터 행정패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등록기관의 주사무소의 소재지 기준)동안 그 결정의 집행을 보류한다. 만약 당해 10영업일 동안 등록기관이 등록인으로부터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절차규칙 제3조 (b)(xiii)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일반적으로 그 관할재판지는 등록기관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나 등록기관의 Whois DB에서 참조할 수 있는 등록인의 주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절차규칙 제1조 및 제3조 (b)(xiii) 참조)에 제소하였다는 공식적 문서(법원의 직원에 의해 직인이 날인된 소장의 사본과 같은 공식적 문서)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결정을 집행한다. 당해 10영업일 이내에 등록기관이 등록인으로부터 제소하였다는 공식적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행정패널의 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고 (i) 공정증서에 의한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서, (ii) 등록인이 제소한 당해 소송이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 (iii) 당해 법원으로부터 등록인의 소를 기각한다든지 등록인이 그 도메이니름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나 결정의

사본을 접수할 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5. 다른 類型의 紛爭 및 訴訟.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인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록인과 등록기관을 제외한 제3자간의 도메이이름의 등록에 관한 모든 다른 유형의 분쟁은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의 해결 또는 기타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한다.

6. 등록기관의 紛爭에 대한 關與. 등록기관은 등록인과 등록기관을 제외한 제3자간의 도메이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대한 여하한 분쟁에도 일절 관여하지 아니한다. 등록인은 등록기관을 분쟁당사자로 선정하거나 그러한 분쟁절차에 참가시켜서는 아니된다. 만일, 등록기관이 분쟁당사자로 선정된 경우, 등록기관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항변을 제기하고 등록기관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다른 모든 대항절차를 취할 일체의 권리를 갖는다.

7. 現狀維持. 등록기관은 상기 제3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도메이이름등록의 취소, 이전, 사용가능조치, 사용불능 조치, 또는 도메이이름 등록에 관한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기타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8. 紛爭中 도메이이름의 移轉

a. 도메이이름의 新 保有者에로의 移轉. 등록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당해 도메이이름의 등록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i)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의 계속중 또는 종결후 15일간(등록기관의 주요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 기준) 또는, (ii) 등록인으로부터 도메이이름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 당해 도메이이름 분쟁에 대한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판결 또는 재정에 따른다는 뜻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법원 또는 중재기관의 심리절차의 계속중. 등록기관은 본조의 규정에 반하는 도메이이름의 이전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b. 등록기관의 變更. 등록인은 제4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이러한 절차가 종결된 후 15일간(등록기관의 주요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 기준)에는 도메이이름 등록을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소송·중재가 진행되는 경우, 등록인이 등록기관에 대하여 등록한 도메이이름이 이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 계속적으로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인은 다른 등록기관로 이전할 수 있다.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소송·중재가 계속중 도메이이름 등록이 등록기관에 이전된 경우, 당해 도메이이름에 관한 분쟁은 이전의 등록기관의 도메이이름 분쟁해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9. 이 規定의 改正. 등록기관은 ICANN의 허가에 의하여 언제라도 이 규정을 개정할 권리를 가진다. 등록기관은 그 개정된 규정이 발효되기 30일전에 등록기관의 <URL>상에 개정된 규정을 공개한다. 분쟁해결기관에의 분쟁해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규정에 의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절차의 개시당시 유효했던 규정이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적용되고, 이 규정의 개정 이전에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발생이 그 개정규정의 발효일전, 당일 또는 당일후이든지를 불문하고 개정된 규정은 모든 도메인이름의 분쟁과 관련하여 등록인을 구속한다. 등록인이 이 규정의 개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등록기관에 지급된 어떠한 비용도 환급받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당해 등록기관에 그 도메인이름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것 뿐이다. 개정된 규정은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할 때까지 적용된다.